

보도 일시	2022.3.30.(수) 16:00	배포 일시	2022.3.30.(수) 14:00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	책임자	과 장 김홍섭 (044-215-5930)
		담당자	사무관 심지애 (ziaee76@korea.kr)

협동조합 조합원 50만명 시대를 열었다

- 제20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 -

□ 기획재정부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0차 협동조합정책 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,

- 제5차('20년말 기준)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제3차('20~'22) 협동조합 기본 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,
- 협동조합 10주년 기념하여 그간 성과를 상징하는 대표협동조합을 선정 하는 '베스트 협동조합 어워드' 개최 계획을 함께 보고하였음

< 제20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요 >

- ▶ 일시 : '22. 3. 31.~'22.4.4, 서면 회의 개최
- ▶ 위원 : 기재부 제1차관(위원장), 송재일 명지대 교수 등 민·관 19명 위원
- ▶ 안건 : ①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, ②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, ③협동조합 10주년, '베스트 협동조합 어워드' 개최 계획

□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('20년말 기준)를 살펴보면,

- 운영중(납세 또는 고용보험 가입)인 협동조합 수는 8,926개이며, 전체 조합원 수는 49.3만명으로 '21.12월 기준으로는 50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판단됨
- 전체 피고용자수(임금 근로자+ 유급형 임원)는 54,153명('18년 31,335명)으로 증가하였고,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*과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취약 계층 비중도 상승**하였음

* 월평균 임금(만원) : ('18년) 158.2만원 → ('20년) 176.9만원

** 취약계층 비중(취약계층 인원/전체 임금 근로자) : ('18년) 42.3% → ('20년) 57.9%

↳ 55세 이상 고령자, 경력단절여성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 등

○ 평균 자산은 2.5억원('18년 2.3억원), 부채는 1.8억원('18년 1.2억원)으로 증가 하였으나, 자본은 0.6억원('18년 1.1억원)으로 감소함

-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('18년 평균매출액 3.7억원 → '20년 3.0억원)로 평균 당기순이익이 감소('18년 대비 △433만원) 한 것에 기인함

□ 지난 3년간 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와 성장지원을 위해 제3차 ('20~'22) 협동조합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함

○ 그 결과, 협동조합의 금융조달 애로해소를 위한 우선출자제도 도입*과 사회적협동조합 교육·보건용역 부가가치세 면제** 등 제도를 개선하였고,

*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위해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선거권·의결권이 없는 우선출자에 대한 발행근거 마련('20.3.31 협동조합기본법 개정)

**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·산후조리·보육 용역 및 교육 용역에 부가 가치세 면제('20.7.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)

- 협동조합의 성장 지원을 위해 부처협업 사업으로 '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 지원사업*'을 확대하고,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내실화** 하였음

* 사회적 경제 다양한 유형 포괄 지원 및 고성장 기틀 마련('21년 19억 → '22년 32억 편성)

** 연도별 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등 공표(협동조합 누리집)
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: ('16) 630억원 → ('18) 1,132억원 → ('20) 2,656억원

○ 아울러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규모화를 위해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법적 근거를 마련*하여 생산·소비·금융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였고,

* 협동조합기본법 상 (사회적)협동조합·개별법 협동조합(신협·생협)이 회원으로 참여하여,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('21.12월 기준 4개 설립, '20.3.31 협동조합기본법 개정)

-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등을 위해 정부입법안을 발의('21.1.7)하였음

* 조합 내부 갈등 관리(조합원 총회 소집 청구권, 의안제안권 등), 변경신고 간소화(변경신고 주요사항 시행령에 명시 등), 실태조사 개편방안(1년, 3년으로 분리운영 등) 포함

○ 다만, 지연 중인 상호금융 협동조합의 출자 활성화*, 노동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** 등은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임

* 신협법 개정안(상호금융 협동조합의 다른 협동조합 출자 관련, 박정 의원 발의안 등) 국회 계류 중

** 경영어로 기업의 노동자협동조합 전환으로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세제지원 등 부처협의 필요

- 아울러, 기획재정부는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정 10주년을 기념하여, 그간의 성과를 상징하는 협동조합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‘베스트 협동조합 어워드(The Best Coop Awards)’를 개최할 계획임. (*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동 개최)
- 7개 분야(교육, 과학·기술, 보건·복지, 농업·농촌, 환경, 문화·예술, 기타)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*을 대상으로 공모하여,
 - *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중협동조합연합회
 - 전문가와 국민이 심사위원으로서 운영성과, 정체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각 분야 ‘베스트 협동조합’을 선정하고,
 - 높은 평가를 받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, 대상* 포함 21개의 상장과 5,900만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임.
 - * 각 분야 ‘베스트 협동조합’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협동조합에 ‘대상’ 수여
- 1~2차 심사(분야별) 및 종합대회를 거쳐 ‘제4회 사회적경제 박람회’(7.8~10일, 경북 경주)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며,
 -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대회 일정은 4월 말 ‘협동조합 누리집(coop.go.kr)’에 게시할 예정임.
-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 지난 10년간 협동조합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이 도모되었다고 평가하고,
 -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의 비전이 포함될 「제4차(’23~’25) 협동조합 기본계획」을 금년내 마련하겠다”고 강조하였음

참고 1

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

-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(’20년 말 기준) 결과, 협동조합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협동조합 설립(신고·인가) 수가 19,429개로, ’18년(14,526개) 대비 33.8% 증가하였으며,
 - * 협동조합 수(개) : (’16년) 10,615 → (’18년) 14,526 → (’20년) 19,429
 -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(’18년: 47.2 → ’20년: 49.3만명)도 증가하였으나,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(’18년: 3.7 → ’20년: 3.0억원), 자본(’18년: 1.1 → ’20년: 0.6억원) 등 감소하였음
 - 협동조합 총 피고용자(임금 근로자+유급형 임원)수는 ’20년 54,153명으로, ’18년(31,335명) 대비 73% 증가하였으며,
 - 월평균 임금(’18년: 158.2만원 → ’20년 176.9만원), 주당 근로시간(’18년 31.4시간 → ’20년 29.9시간)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었음
 - 특히 장애인, 경력단절 여성,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규모가 146.6% 증가(’18년 11,243명 → ’20년 27,727명) 하는 등 높은 취약계층 고용 효과를 보임
- 이처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(’12.12월) 후 10년이 지나면서, 협동조합은 양적으로 큰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음
 - 다만, 운영율 저조(’20년 49.5%), 규모의 영세성*은 여전히 숙제임
 - * 조합원수 10명 이하 조합이 60.2%, 자산 1억원 이하 조합이 57.6%
 - 또한, 연합회 가입률(’20년 16.3%)과 연합회 운영률(’20년 37.5%)로 협동조합 연대·협력 활성화가 필요함
- 향후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시 협동조합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*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도 제기됨
 - * 향후 정책수요(%) : 운영자금 지원(24.8%), 창업자금 지원(24.1%), 판로·마케팅 지원(17.2%)

◇ 5대 전략, 15대 정책과제 內 63개 세부 과제 점검 결과('21.12월 기준)

- 총 63개 과제 중 11개(17.5%) 과제가 완료,
44개(69.8%)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며, 8개(12.7%) 과제 지연

□ (완료 : 11개) 이중협동조합연합회 설립지원 및 우선출자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*, 연합회 공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** 등

- *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사항('20.3.31)인 이중협동조합연합회(인가기준, 설립절차 등), 우선출자제도(발행요건, 절차 등) 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 시행령에 규정('20)

** 공제사업의 운영·감독기준 등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운영방법 수립('21)

□ (정상 : 44개) 성장지원사업 추진*, 우선구매 계획·실적 공표** 등

- * 사회적경제 최초 부처 협업사례로 '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' 신규 편성,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유형을 포괄 지원 및 고성장 기틀 마련('21) 19억 → ('22) 32억

** 연도별 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 공표(협동조합 누리집)

-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등을 위한 정부입법안 발의*

- * 조합 내부 갈등 관리(조합원 총회 소집 청구권, 의안제안권 등), 변경신고 간소화(변경신고 주요사항 시행령에 명시 등), 실태조사 개편방안(실태조사를 1년, 3년으로 분리운영 등)

□ (지연 : 8개) 노동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*, 상호금융 협동조합의 출자 활성화** 등

- * 법개정 사항(지방세특례제한법)임에 따라 부처협의 등 필요

** 실험법 개정안(상호금융 협동조합의 다른 협동조합 출자 관련, 박정 의원 발의안 등) 국회 계류 중

<제3차 기본계획 과제 추진현황>

순번	정책과제(전략)	완료	정상	지연	합계
1	(Advanced)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	2	12	1	15
2	(Band)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	3	7	2	12
3	(Community) 지역사회 중심 운영	-	10	-	10
4	(Deregulation)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	5	6	4	15
5	(Education) 교육 및 홍보 내실화	1	9	1	11
합 계		11	44	8	63